

「2025년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 및 안정적인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3.

천안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 총사업비 : 145,000천원
- 지원기간 : 2025. 1. 1. ~ 12. 31. ※ 예산액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 신청기간 : 4월 ~ 12월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지원대상 : 60세 이상 노인 고용 민간기업으로 기업 주소지가 천안시이며, 취업 노인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충남인 경우 아래 기준 충족시
 - ▶ 2025. 1. 1일 이후 신규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
 - ▶ 2025. 1. 1일 이후 정년퇴직자 1개월 이상 계속고용 중인 중소기업

-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지원 시 재고용 근거규정 등이 있을 것
- ◎ 예외적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노인을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자를 계속 고용 (60세 이상) 한 농림어업 관련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시에서 지정·관리중인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중소기업 여부 불문 민간 중소기업 지원대상 포함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관련
- ◎ 시간선택 파트타임 근무자 포함 지원
 - 1일 3시간 이상(월 10일 이상) 근무,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무자
 -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사회보험가입 적용 대상
- ◎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시 주휴시간 8시간 포함 48시간
- ◎ 2025년도 60세이상 신규고용자 계속 근로 및 기준 적합시 지원

- 지원기간 : **노인 채용 1인당 최대 36개월(만3년) 간 지원**
 - ※ 경과규정 :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계속) 고용하여 2025년에 최초로 지원받는 경우와 종전에 지원받고 있던 근로자중에서 '24.12.31. 기준으로 기존 지원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 최대 3년 지원 가능
 - ☞ 현재까지 총 3년 지원받은 근로자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2025년 **최저임금의 최대 30%** 지원
 - ▶ 최저임금(시급 10,030원×209시간) 월 2,096,270원 임금 지급 시 **월 최대 628,881원** 지원
 - ※ 2024년도 미신청 분 소급지원 불가, 2025년 지원기준 부적합 시 지원 불가
- 지원방식 : 민간기업 先 임금지급, 後 보조금 지원
- 지원 우선순위 : **접수 우선 순 원칙**
 - **경합 시 순위** ① 기초연금수급대상자, ② 신규 고용 계약근로자
 - ③ 장기 고용계약 근로자 ④ 1일 풀타임 근로자
 - ⑤ 시간선택 파트타임 근무자
- 접수 및 문의처 : 천안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041-521-5438)

2. 지원제외 대상

가. 지원제외 근로자

- 최저임금(시급 10,030원) 미만 급여 근로자
- **매월 급여액이 최저임금(월 2,096,270원)의 1.5배(3,091,110원) 초과 근로자**
 - * 급여액: 노동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 개념(기본급+초과근로수당+각종 상여금 등 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
- 매월 급여액이 59만원 미만인 근로자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
-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 국민연금 가입대상(18세 이상 60세 미만)
- 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하며, 신규 고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신청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천안시가 아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신청대상 근로자가 신청일 현재 해당기업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 범위 및 중소기업 규모기준) 붙임 참조

(중소기업확인서발급)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나. 지원제외 업종 및 대상

○ 소비·향락업종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법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국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 기타 제외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확인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업주
 - * **확인방법** : 일모아시스템 및 사업장별 관할고용센터(참고3)를 통한 부정수급 여부확인(분기별)
-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 요양병원은 중소기업에 포함될 경우 지급 대상

3. 구비서류

*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각 1부.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계속고용 시 계속 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사업주 명의) 각 1부.
- ※ 기업은 노인을 고용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노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류”를 천안시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에 제출
- ※ 고용장려금은 지급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붙임 1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급 관련서류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농촌 체험휴양마을 포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부동산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직전 보험연도 연평균 기준 (2024년도 신규사업장의 경우 성립월의 말일 기준) 등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차수)				장려금 지원요건 최초 충족일 (최초 신청 시에만 기재)		
년 월 (명)		구 분	월	월	월	년 월 일		
		해당 월말 전체 피보험자수						
		신청인원 (지원대상 노인수)						
3. 신청 내용: 신청대상 근로자에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포함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노인채용 현황() 명								
연번	해당연월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년 월 일)	월 임금총액(원) (세전기준)				
1								
2								
3								
4								
5								
장려금 신청인원 () 명, 신청금액 ()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노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월별임금대장 2. 임금지급증빙서류 3. 근로계약서 4.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5. 통장사본 등 입증서류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 램	담 당	팀 장	과 장			결재 연월일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

-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이 노인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 장려금 지원을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에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중소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농촌체험휴양마을 포함)에 해당됩니다.		
2.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3.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근로자 채용 등 조건으로 금전적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일 3시간(월 10일 이상) 근무하고, 1개월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입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자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며 월 59만원 이상입니다.		
3.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국민)		
4. 해당근로자는 충청남도(천안시)에 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입니다.		
5.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아닙니다.		
6.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만약 기재내용과 달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및 1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

확 인 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경력·자격사항 •임금 및 채용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충청남도에서는 보다 원활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재정지원일자리 평가 및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충청남도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설문조사, 기타 본사업과 관련 사항 등)
제3자 (제공 기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등 업무 관련 기관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경력·자격사항 등
제공 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충청남도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 1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중소기업 범위

관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참고 2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인폼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 3 지방고용노동관서 충청 관할고용센터 현황

관서명	관할고용센터	관할구역	비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금산고용복지센터 (041-731-8690)	금산군	
	공주고용복지센터 (041-851-8501)	공주시	
	논산고용복지센터 (041-731-8600)	논산시, 계룡시	
천안지청	천안고용복지센터 (041-620-7400)	천안시, 당진시, 예산군	
	당진고용복지센터 (041-620-7456)	당진시	
	예산고용복지센터 (041-620-9511)	예산군	
	아산고용센터 (041-570-5500)	아산시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041-930-6200)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부여고용복지센터 (041-930-6237)	부여군	
	서천고용복지센터 (041-930-6245)	서천군	
	홍성고용복지센터 (041-930-6209)	홍성군	
서산출장소	서산고용센터 (041-661-5600)	서산시, 태안군	
	태안고용복지센터 (041-661-5691)	태안군	

참고 4 최저임금 계산 및 적용범위 등 참고사항

-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급여명세서상 4대 보험, 주민세, 갑근세 등 세금 포함)
- ➡ 최저임금은 4대 보험료, 갑근세 등의 공제항목 금액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의미함(산재보험료 100% 사업주가 지불)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2025.1.1.~2025.12.31. 적용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 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이(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최저임금 월 환산액 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 2025년 시간급 최저임금 10,03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 2,096,27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